



4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¹

팀 커티스

유네스코방콕사무소 문화부장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로부터 동남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에 관해 발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나는 2003년 협약과 관련된 보호 활동, 특히 협약의 비준, 목록작성, 그리고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에 제정된 여러 법적 조치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보호 활동은 공동체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유네스코나 어떠한 국제협약, 법률, 국내 여러 조치들도 필요 없을 때가 가장 최선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이상일 뿐 안타깝게도 세계가 직면한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2003년 협약을 제정하고 다양한 보호 조치들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1. 개관


동남아시아를 이야기 할 때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인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을 언급하게 된다. ASEAN 국가 중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 등 6개국이다.

.....
1_ 본 원고는 팀 커티스가 구술로 발표한 내용을 기록한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몇몇 국가는 비준 과정에 있으며 일부는 아직 어떻게 될 지 불분명하다. 이번 발표에서는 비록 협약을 비준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협약의 원칙들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 표는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된 일부 종목을 정리한 것이다.

 동남아시아 5개국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종목		
국가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보호 모범사례
캄보디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메르의 그림자 연극 스벡롤(2008) 캄보디아 왕실무용(2008)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앙콜롬(2010) 바틱(2009) 크리스(2008/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2005)) 와양 인형극(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합롱안 바틱 박물관의 바틱 무형문화유산 교육과 훈련(2009)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막용 연극(2008) 	


 동남아시아 5개국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종목		
국가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보호 모범사례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라나오족의 다항전 서사시(2008) 이류가오족의 후드후드 장악(2008)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동과 속 사원의 종 축제(2010) 완어 박닌 민요(2009) 베트남 궁중음악 나남(2008) 징의 문화공간(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츄 장악(2009)

여러분은 아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종목이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는 점에 의아해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주지하다시피 처음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프로그램이 시행될 당시에 포함되었던 종목들이 이후에 대표목록에 자동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인도네시아가 1개 종목을 모범사례에 등재한 것이다. 모범 사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 역시 1개 종목이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긍정적인 발전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대표목록에 등재된 일부 종목은 최근에 등재를 신청한 것이며 일부는 걸작 프로그램에서 넘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협약의 맥락에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들이 있다.


II. 무형문화유산과 법률

소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 관련법의 일부를 모아보았다. 소지역 전반에 걸쳐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캄보디아는 1996년 제정된 문화유산보호법에 살아있는 전통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협약에서 이상적이라고 권장하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률적 체계는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법률을 검토하고 새롭게 정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라오스 역시 같은 상황이다. 2005년에 제출


 **무형문화유산 관련 법령**

- ◆ **캄보디아**
 - ▶ 문화유산보호법(1996)
- ◆ **라오스**
 - ▶ 국가유산법(2005) : (제46조) 무형 중독의 국가유산 보존 및 보존
 - 진흥과 보호
 - 국내외 연구자들의 심도 깊은 연구 필요성 강조
 - 국가 기밀로 간주되는 기록의 저작권 언급
- ◆ **말레이시아**
 - ▶ 국가유산법(2005)
 -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제60조)

 **무형문화유산 관련 법령**

- ◆ **필리핀**
 - ▶ 국가법 7356 (1992)
 - 필리핀의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프로그램 참여를 제시함
 - ▶ 국립박물관 선언문 제1조 (2001)
 - 후드후드 협약은 국가 문화재이다.
 - ▶ 국가문화유산법 (2009)
 - 필리핀 문화재 등록소를 설립한다.
- 태국**
 - ▶ 헌법 (2007) : 공동체의 문화재 보호 참여

한 국가유산법에 무형적 형태를 띠는 국가유산 보존 및 보호라는 구체적인 조항을 삽입하였다. 이는 문화유산 연구 기준 강화의 필요성과 그 촉진뿐만 아니라 유산 보호와 같은 활동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좀 더 나아간 것이다. 또한 이 법은 저작권 문제에 관한 관심도 포함하고 있어 비록 국가 문화유산법 속에 존재되어 있지만 협약이 지지하는 법적 수단에 어느 정도 근접해 있다.

 **무형문화유산 관련 법령**

- ◆ **베트남**
 - ▶ 문화유산법(2001), 법령 #92/2002 /ND-CP(2002)
 - ▶ 각 단계별 정부 기관의 정책과 책임
 - ▶ 2003년 협약 당사국으로써 협약 사항 이행 절차
 - 조사, 발굴, 목록작성, 분류, 기록
 -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베트남 무형문화유산 선정
 - (1) 민족 언어와 기록, (2) 공예, (3) 축제 형태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가치 진흥
 - ▶ 무형문화유산의 내용과 가치 훼손 및 왜곡을 방지
 - ▶ 베트남 무형문화유산 연구와 자료 수집을 수행하기 위한 해외 베트남인 및 외국인 연구자 허가
 - ▶ 국가 박물관이나 정부 기구에 무형문화유산, 유물, 골동품, 국보를 맡김

말레이시아의 경우, 흥미로운 것은 무형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조항이 2005년에 제정된 국가유산법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필리핀도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필리핀의 사례는 향후 발표에서 많이 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간단하게 언급하겠다. 필리핀은 우리가 익히 들어온 살아있는 인간문화재 제도와 필리핀 문화재 등록 제도 수립을 포함하여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태국은 아직 무형문화유산 관련 규정이 많지는 않지만 2007년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면서 문화재 보호 활동에 공동체 참여를 촉구하였다. 문화재에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무형문화재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베트남과 관련해서도 잠시 후 많은 것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베트남이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해온 철저하고 광범위한 노력을 상세하게 논하지는 않겠다. 여기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에서 여러분은 현재 베트남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정책과 시행 절차들을 확인할 수 있다.

III. 목록작성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협약 당사국이든 비협약국이든 목록작업이 어느 정도 까지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국가	발표	주요사항
캄보디아	2004년 유네스코프놈펜사무소	소수민족 언어, 민속, 문학, 시 등의 발주 포함 캄보디아의 궁중 무용을 둘러싼 문화 종속에 집중
인도네시아	진행(2009): 유네스코의 '인도네시아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위한 실무소재자'에서 권고한 범주를 따름	
말레이시아	진행: 문화예술유산부(KekKWA)	
미얀마	진행: 문화부 3개의 목록이 작성 중에 있음	6가지 범주: 문화 및 전통, 종교 및 종교 관습, 언어 및 문학, 예술 및 예술 활동, 세시 축제, 의상 및 의복

국가	발표	주요사항
필리핀	진행: 국가문화예술위원회(NCCA)	협약 조안이 작성된 이후부터 목록 조안 준비 위원회(IBC) 인간문화재 제도의 개발과 관련
태국	진행(2009-2011): 문화인종과	전통 스포츠 발주 포함 총 80개의 종목이 태국 문화유산으로 간주됨
베트남	진행: 문화정보부, 문화유산과	인간문화재 목록: 권위 장자들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유네스코 공동)

캄보디아는 2004년 프놈펜 소재 유네스코 사무국과 진행한 목록작업 결과를 출간하였다. 여기에는 소수민족의 언어, 민속, 문학 그리고 시 부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절차에 선정되어 현재 대표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캄보디아 왕립 궁중 무용과 관련된 문화 종목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캄보디아는 현재까지는 국가 차원의 목록은 없지만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인도네시아 역시 매우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그 중 흥미로운 것은 각 공동체들이 문화부를 통해 자신들의 유산 목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목록 모델을 구축한 것이다. 그들이 온라인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데에는 몇 가지 메커니즘이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누구나 완전히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접속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목록작성을 한 공동체 구성원임을 확인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에는 600여 개의 언어와 다루어야 할 엄청나게 많은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매우 흥미로운 절차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뒤에서 보호활동을 논할 때 보게 되겠지만 말레이시아 역시 목록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말레이시아는 비록 협약을 비준하지는 않았지만 협약의 원칙들을 준수하는 활동을 시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가 사업에 착수하였다.

미얀마도 각 부문별로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지정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아시


다시피 유네스코는 목록작성 기준, 법적인 틀, 혹은 규범 사례를 의도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목록작성의 모델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지만 협약과 운영 규칙을 마련하고 전문가 회의를 거치면서 한 가지 기준 모델을 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목록작성 사업을 완수하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은 분명하다. 목록을 작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목록작성 방식을 고안하고 만들어내야 하며 어떤 시스템이 그들 국가를 위해 가장 좋은 효과를 거둘지를 알아내야 한다. 필리핀은 나중에 좀 더 이야기가 될 것이다. 국가문화예술위원회는 목록 초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꽤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곧 듣게 될 것이다.

태국은 과거 수 년 동안 문화진흥과를 통해 이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진지하게 작업해 왔다. 현재 그들은 약 80개 종목을 목록으로 작성했다. 태국은 전통스포츠 분야를 제외하고는 협약에 명시된 범주를 어느 정도 따르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다른 목록작성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문화재 목록도 보유하고 있다. 베트남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IV. 보호 활동 계획

이제 과거 수년간의 사업을 살펴봄으로써 소지역에서 행해져 왔던 보호 활동 계획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계획
역량 구축 프로그램을 위한 초대

- ❖ **브루나이 다루살람**
 - ▶ "수집품과 무형유산 보존"에 관한 국제 훈련 과정 (2011년 3월)
- ❖ **말레이시아**
 - ▶ 무형문화유산 기록과 보호에 관한 세미나(2011년 5월)
- ❖ **동티모르**
 - ▶ 2003년 협약 비준에 관한 역량 구축 워크숍(2011년 11월)
- ❖ **태국**
 - ▶ 국경을 넘는 무형유산에 관한 지역 협력 회의: 국제협력을 통한 보호(2010년 7월)
- ❖ **라오스**
 - ▶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대한 이해당사자 워크숍(2011년 7월)



무형문화유산 보호 계획
단기 실행계획

- ❖ **말레이시아**
 - ▶ 5개년 실행계획
 - 보호 대상 무형유산의 발굴
 - 개발과 목록화를 위한 프로그램 도출
- ❖ **필리핀**
 - ▶ 3개년 실행계획(2004-2007): 후드후드 창악을 중심으로
 - 중점사안: 교육, 연구, 발표, 진흥
 - 이후가오 무형문화유산 보존위원회(NCCA-IHC 산하)

브루나이 다루살람은 최근에서야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무형유산과 유형유산을 함께 다루는 국제 훈련 과정을 시작하였다. 말레이시아는 올 3월에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기록화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티모르는 역시 최근 들어 협약 비준에 관한 역량 구축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태국은 지난해에 다국적 무형문화유산과 국제협력을 통한 이의 보호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올해 초 라오스는 여러 정부 부처와 관리들을 위해 2003년 협약에 관한 이해당사자들의 워크숍도 열었다.

다음은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실천계획 중 두 나라에서 실시되었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전략적 정책들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겠다. 말레이시아는 5개년 실천계획을 개발하였으며 필리핀은 그보다 오래 전에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많은 사례 중 일부이다. 필리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듣게 될 것이다. 말레이시아가 어떻게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롭다.

앞에서 살아있는 인간문화재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이 이 제도를 수립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계획

인간문화재 제도(IHT)

◆ **캄보디아**

◆ **필리핀**

- ▶ 국가 인간문화재 위원회(2007):
- 목적: 다량건 서사시 장자 기록작업

◆ **베트남**

- ▶ 인간문화재 목록: 관어 장자를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유네스코 공동)

V. 그 외 보호 활동

기타 무형문화유산 보호 계획

◆ **인도네시아**

- ▶ 비준 후 법적 이행
 - 문화보존을 위한 지역 정부의 의무와 책임 실행을 위한 공동 장관령
 - 전통문화의 지적재산과 표현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안
 - 전통 지식의 관리에 관한 법안

기타 무형문화유산 보호 계획

◆ **말레이시아**

- 문화예술유산부(KeKKWa)
- NGO, 교육기관, 공연예술 회사에 대한 후원
- 국가 예술 시상식, 자국어 사용 의무화, 학교에서의 민족 언어 교육
- 전통 의학 실연자 등록 제도
- 대중을 위한 예술 프로그램 : 1년 단위의 문화 행사들
- 전통 노래의 디지털 기록(2003)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시행해 오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법률 체제 및 프로그램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협약 비준 이후 '문화 보존에 대한 지방 정부의 행정 의무와 책임'을 위한 공동 장관령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법령을 제정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많은 주로 구성된 지방분권적 체제이므로 국가는 지방 당국이 무형문화유산을 지방 예산과 프로그램에 통합하도록 요청하는 법을 제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통문화와 관련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활용에 관한 법안과 전통 지식 운영에 관한 법안을 마련하였다.

말레이시아는 많은 지역 NGO, 교육기관 그리고 공연예술단에 기금을 지원해왔다. 또한 전통의학 의사 등록제를 시행하고 전통 창가 기록 프로그램과 예술 프로그램도 마련하였다. 이 모든 것은 정부가 협약의 범위 내에서 혹은 측면에서 지원을 제도화한 보호 활동의 일환이다.

기타 무형문화유산 보호 계획

- **미얀마**
 - 무형문화유산 교육제도
 - 예: 국립음악연극예술학교, 문화 대학교
 -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최근 학계의 관심, 특히 테라바다 불교 관련

기타 무형문화유산 보호 계획

- **필리핀**
 - ▶ 3개년 실천계획(2004-2007): 후드후드 창악을 중심으로
 - 중점사업: 교육, 연구, 발표, 진흥
 - 이후가오 무형문화유산 보존위원회(NCCA-IHC 산하)
 - ▶ 2007: 국가 인간문화재위원회: 다랑겐 서사시를 중심으로
 - 인간문화재 제도(LHT)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이라도 협약을 둘러싼 국제 활동의 영향을 받아 온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미얀마는 주립 순수 미술, 음악 및 연극 학교를 설립하였다.

필리핀에 대해서는 잠시 뒤 발표가 있을 것이므로 태국 사례로 바로 넘어가겠다.

기타 무형문화유산 보호 계획

- **태국**
 - ▶ 공주 마하 차크리 시민권 인류학 센터
 - 무형문화유산 e-러닝 자료
 - 매해 무형문화유산과 박물관 현장 학교 코스
 - ▶ 국가 유산 목록
 - 큰 공중 무용(2009)
 - 난 아이 그림자 연극(2009)
 - 전통 태국 무용(2010)
 - 악마와 원숭이를 위한 무용 안무(2010)

기타 무형문화유산 보호 계획

- **베트남**
 - ▶ 문화정보부
 - 베트남 무형문화유산 위원회(2011)
 - 무형문화유산 기록, 인증, 전승, 재활성화
 - 베트남 무형유산협회(2004): 대중 부문 포함
 - ▶ 베트남민족학박물관은 무형문화유산 대중 사업을 시행하는 선도적인 기관이다

태국의 경우, 공주 마하 차크리 시던돈 인류학 센터가 무형문화유산 e-러닝 자원 개발과 중국 운남성을 지나 흐르는 대 메콩강 자료 조사를 위한 현지 학교 운영, 그리고 지역 박물관의 역할과 공동체 박물관이 무형문화유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태국은 국가유산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많은 무형유산 종목을 등재하였다. 베트남은 후에 더 많은 논의가 있을 것 이기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VI. 과제과 쟁점

동남아시아 국가의 여러 활동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당면 과제들을 확인할 수 있다.

협약과 관련한 몇 가지 난제들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 내의 문화적·민족적 다양 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자신들 국가 영역 내의 민족적 다양성을 완전히 인정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국가 교육 체계가 근대화된 서구식 체계를 선호하는 분위기 속에서 무형문화유산과 전통 지식이 소외되고 있다. 이는 분명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필리핀은 살아있는 전통 학교를 세움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온 모범사례이다. 알다시피, 경제적 성장, 근대 의학, 기술 그리고 통신 발달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생활방식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쳤으며 무형문화유산은 그 모든 변화 속에서 길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현대적 오락물이 전통놀이를 대체하였고 결국 몇몇 무형문화유산은 소멸되기도 하였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정부 부처 간의 명확한 공조가 항상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정부의 한 부처가 무형문화유산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고

과제와 쟁점

국가적 차원

- ◆ 사회경제적 요인
 - 일부 국가들은 민족 다양성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국가 교육 제도의 변화가 전통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 다수의 생활방식과 연관되는 경제적 성장, 현대 의학, 기술, 커뮤니케이션, 관습은 지역적 지식과 의식의 필요성을 약화시킨다.
 - 현대적인 놀이문화가 축제와 민속 공연을 대체하기도 한다.

과제와 쟁점

국가적 차원

- ◆ 정부 기관들의 협력 부족
- ◆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주요 개념의 이행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해 부족

Wayang Kulit Puppets, Indonesia
© UNESCO

있다 해도 다른 한편에서 어떤 부치는 무형문화유산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지도 모른다. 사실상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항상 명확한 것도 아니다.

국제적 차원에서 볼 때, 다국적 무형문화유산 종목과 관련한 문제를 찾을 수 있다. 많은 무형문화유산이 국경을 초월하여 매우 유사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국가에 이러한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나라들이 있는 것도 분명하다. 이는 이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우리가 익히 경험했던 것이다.

반면 여러 나라의 공고한 협력을 통해 대표목록에 등재된 종목도 있다. 바로 매사냥으로 이 종목은 유럽에서 아랍을 거쳐 멀리 한국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국제적 협력과 협동으로 이 공동 유산을 대표목록에 등재하였다. 이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Ⅷ. 현지 사무소를 통한 유네스코의 지원

마지막으로 유네스코가 직면한 여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유네스코는 목록작성 사업을 끝낸 캄보디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국가 역량 구

축 워크숍을 개최해 왔다. 또한 협약 당사국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침서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방콕사무소의 경우, 한국 강릉시의 기금 지원을 받아 전통 어린이 놀이를 기록화하는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우리는 말레이시아, 라오스, 태국 그리고 캄보디아 등의 도시와 농촌에 산재한 다양한 소수 민족들과 함께 전통 어린이 놀이를 기록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물은 DVD로 제작되었다. 우리는 총 100여 개의 놀이를 발굴, 기록하였다. 이 DVD는 교사용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알게 된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방콕과 같은 도시 아이들은 전통 놀이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아이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즐기는 것만큼 밖에 나가서 막대기를 들고 돌을 던지고 노는 전통 놀이를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전통놀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은 아이들이 전통놀이를 배울 기회가 없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역사무소를 통한 유네스코의 지원

2003년 협약의 이행에서 국가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 아태지역에서 국가 역량 강화를 통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 수혜국가	▶ 네팔
▶ 부탄	▶ 파푸아뉴기니
▶ 캄보디아	▶ 스리랑카
▶ 목계도	▶ 통티모르
▶ 라오스	
▶ 홍콩	

자금 지원
 일본 : 1백만 달러
 한국 : 20만 달러



지역사무소를 통한 유네스코의 지원

사업 활동

- ◆ 비준 워크숍
- ◆ 이행 워크숍
- ◆ 공동체 기반 목록작성 워크숍과 목록작성
- ◆ 긴급보호 워크숍

한국과 일본 정부의 기금 지원 덕분에 아태지역 9개국이 국가 역량 구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유네스코가 국제적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며, 개별적 보호 활동을 하려고 애쓰기 보다는 협약의 원칙을 이해하고 이행하며 각국 나름의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 구축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여기에는 협약에 의해 마련된 무형문화유산 기금을 활용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그 기금은 현재 전액 사용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위에 나열한 국가들과 함께 일하게 될 것이며 많은 사무국들이 협약 이행에 참여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에게는 훈련을 전담하는 팀이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과 함께 작업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활동에는 협약의 비준과

일반적 이행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기반을 둔 목록작성, 그리고 긴급보호목록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워크숍 등이 포함된다. 물론 이 활동들은 동남아시아를 넘어 전 아태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